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송도호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1264호

다. 제출일자 : 2020. 2. 4.

라. 회부일자 : 2020. 2. 12.

## 2. 제안사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교육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있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 중임.
- 그러나 관련 법령에 의해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임.

###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主) 출입문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를 규정함(안 제7조의2제1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2. 17. ~ 2020. 2. 24.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수정가결

○ 법률자문 결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볼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에 대하여 추가로 주·정차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육시설의 주(主) 출입문 주변에서 주정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장소<sup>1)</sup>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主) 출입문 주변”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본래 기능과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도로교통법」(이하 “법”) 제12조<sup>2)</sup>에서는 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학원(100인 이상)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sup>3)</sup>을 추진하고 있음

1)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2)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사업기간: 2020. 1~12월 2. 예산액: 35,392백만원(국비 12,636/ 시비 22,756)  
3. 사업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정비(9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114개소),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카메라설치(300대) 4. 지정절차: 신청(시설의 장)→현장조사(구청장)→경찰청 협의→지정(시장)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19.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외국인학교	학원 (100인 이상)
지정현황	1,760	605	612	24	506	10	3

- 또한, 서울시는 ‘2020년도 주·정차 단속 등 종합계획’<sup>4)</sup>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신고제’<sup>5)</sup>의 신고항목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5년 99,976건에서 2019년 156,6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간 평균	‘19	‘18	‘17	‘16	‘15
합 계	119,750	156,639	120,788	115,015	106,329	99,976
서울시	2,514	5,936	2,209	2,107	1,802	516
자치구	117,236	150,703	118,579	112,908	104,527	99,460

4) ‘2020년도 주·정차 단속 등 종합계획’ : 교통지도과-4160

5) ‘시민신고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로 주로 신고 대상은 서울시 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증가는 차량 흐름 등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16년~'18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평균 84건에 육박하고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구 분	합계	차대사람						차대차	
		소계	횡단 중	차도 통행 중	길가장자리 구역통행 중	보도 통행 중	기타		
'16년	발생(건)	96	78	50	7	4	3	14	18
	사망(인)	2	2	0	1	1	0	0	0
	부상(인)	101	80	53	6	4	3	14	21
'17년	발생(건)	81	62	45	3	1	1	12	19
	사망(인)	1	1	1	0	0	0	0	0
	부상(인)	85	64	46	3	1	1	13	21
'18년	발생(건)	77	70	43	7	2	4	14	7
	사망(인)	1	1	0	1	0	0	0	0
	부상(인)	76	69	43	6	2	4	14	7

-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主) 출입구 주변을 주정차 금지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법 제32조6)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 장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6)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내 교육시설의 주(主) 출입문 주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9조제1항제2호7)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안이 관련법 위배 소지도 있는 바,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